제288회 임시회 2010. 3. 23(화)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소방위원회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3. 23. 행정소방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년 3월 11일

충청북도지사

2. 회 부 일 자 : 2010년 3월 12일

3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288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(2010. 3. 16.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Ⅱ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강길중)

1. 제안이유

- 지난 3. 2.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5회 전 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시·군의원선거 구획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
- 청주시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일부 지역선거구가 인구, 생활 권역, 교통 등이 감안되어 재조정됨에 따라 시의원 지역선거구를 도의원 지역선거구 내에서 재획정

2. 주요내용

- 시·군의회 의원 정수 : 131명 (현행과 같음)
- 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 (별표 2)

○ 청주시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에서 시의회의원 선거구역 재획정

7 H	당 초		변 경	비고	
구 분	선거구역	약완수	선거구역	약완수	(도의원)
청 주 시 "라"선거구	분평동, 수곡1 동, 수곡2동	3	모충동, 사직1 동, 사직2동, 수곡1동, 수곡2동	3	청주시 제4선거구
청 주 시 "마"선거구	모충동, 사직1 동, 사직2동, 사창동	2	분평동,산남동	2	청주시 제5선거구
청 주 시 "바"선거구	성화·개신·죽림동, 산남동	2	사창동, 성화·개신·죽림동	2	청주시 제6선거구

※ 타 선거구역은 변동사항 없음

Ⅲ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장용대)

가.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배경 및 추진과정

대한민국 국회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(2010.3.2) 개정 의결하고, 3. 12일 공포됨에 따라 충청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서 의견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.

- ▶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과정
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정안 채택 (2010. 2. 4)
 - 국회 본회의 의결(2010. 3. 2)

충청북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것임.

나. 주요개정내용

- □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
 - 여성후보자 추천 강제조항 신설
 - 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에 여성 1명씩 추천(도의원 및 시원)
 - ※ 정당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 정수의 1/2에 미달되는 경우는 제외

- 선거구역을 인구, 생활권역,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
 - 해당지역 : 전국 9개 시군구(도내는 청주시 도의원 4·5·6선거 구 포함)
- □ 조례에 반영할 사항
 - 선거구역을 인구, 생활권역,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 정한 청주시 도의원 4·5·6선거구내에서 시·군의회 의원 정수 를 조정하는 것임.

13 43	당	초		변 경			
도의원 선거구명	선거구역	인구수 (의원평균)	기초 의원	선거구역	인구수 (의원평균)	기초 의원	인구 편차
청 주 시 제4선거구	분평동,수곡1동, 수곡2동	73,768 (24,589)	3	모충동,사직1동, 사직2동,수곡1동, 수곡2동	73,293 (24,431)	3	87%
청 주 시 제5선거구	모충동,사직1동, 사직2동,사창동	54,158 (27,079)	2	분평동,산남동	65,919 (32,960)	2	117%
청 주 시 제6선거구	성화·개신·죽림동, 산남동	68,862 (34,431)	2	사창동, 성화·개신·죽림동	57,576 (28,788)	2	102%

다. 종합의견

금번 개정안은 2010년 3월 1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청주시 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를 재획정하려는 것으로

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시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 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는 규정과 선거권 평등에 부합하게 의원 1인 당 평균인구수의 ±60%내에서 지역구를 획정하면서,

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자치구·시·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2010년 3월 24일까지 도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임.

이는,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거 충청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3월 11일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.

다만, 선거구역에 대한 도민들에게 충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도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 략"

V. 토론 요지: "생 략 "

Ⅵ. 심사 결과 : 원안의결

Ⅶ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Ⅳ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479호 제출연월일 : 2010년 3월 11일

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지난 3. 2.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시·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

○ 청주시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일부 지역선거구가 인구, 생활권역, 교통 등이 감안되어 재조정됨에 따라 시의원 지역선거구를 도의원 지역선거구 내에서 재획정

2. 주요내용

○ 시·군의회 의원 정수 : 131명(현행과 같음)

○ 시·군의원 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(별표 2)

○ 청주시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에서 시의회의원 선거구역 재획정

구 분	당 초		변 경		비고
丁 正	선거구역	의완수	선거구역	骅	(도의원)
청 주 시 "라"선거구	분평동, 수곡1동, 수곡2동	3	5条从格从客户各个客	3	청주시 제4선거구
청 주 시 "마"선거구	兄弟人科学的教育	2	분평동, 산남동	2	청주시 제5선거구
청 주 시 "바"선거구	성화:개산죽림동, 산남동	2	사창동, 성화개산죽림동	2	청주시 제6선거구

※ 타 선거구역은 변동사항 없음

4. 의안전문 : 붙임

5. 신ㆍ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6. 관련법규 : 붙임

○ 공직선거법 제23조, 제24조, 제26조, 부칙 제2조

충

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2]

시 · 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· 구역 및 의원정수

구 분	지역구명칭	계원 의 원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충청북도	합계	114	46개 선거구	154
	소계	23	9개 선거구	30
	청주시 "가"선거구	3	우암동, 내덕제1동, 내덕제2동, 율량·사천동, 오근장동	5
	청주시 "나"선거구	3	중앙동, 성안동, 탑·대성동, 금천동, 용담·명암·산성동	5
청주시	청주시 "다"선거구	3	용암제1동, 용암제2동, 영운동	3
	청주시 "라"선거구	3	모충동, 사직제1동, 사직제2동, 수곡제1동, 수곡제2동	5
	청주시 "마"선거구	2	분평동, 산남동	2
	청주시 "바"선거구	2	사창동, 성화·개신·죽림동	2
	청주시 "사"선거구	2	복대제1동, 복대제2동	2
	청주시 "아"선거구	3	가경동, 강서제1동	2
	청주시 "자"선거구	2	강서제2동, 봉명제1동, 봉명제2·송정동,운천·신봉동	4

구 분	지역구명칭	제설 원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	소계	17	7개 선거구	25
	충주시 "가"선거구	2	앙성면, 노은면, 가금면, 신니면	4
	충주시 "나"선거구	2	주덕읍, 이류면, 살미면, 수안보면	4
- - 충주시	충주시 "다"선거구	3	달천동, 호암·직동, 지현동, 용산동	4
6 1 / 1	충주시 "라"선거구	2	엄정면, 산척면, 동량면, 금가면, 소태면	5
	충주시 "마"선거구	2	목행·용탄동, 칠금·금능동	2
	충주시 "바"선거구	2	봉방동, 문화동, 성내·충인동	3
	충주시 "사"선거구	4	연수동, 교현·안림동 , 교현 동	3
	소계	11	5개 선거구	17
	제천시 "가"선거구	2	봉양읍, 백운면, 송학면	3
기 권 A	제천시 "나"선거구	2	고암·모산동, 청전동	2
세천시 	제천시 "다"선거구	2	중앙·의림·명동, 용두동, 서부·영천동	3
	제천시 "라"선거구	2	금성면, 청풍면, 수산면, 덕산면, 한수면, 화산동	6
	제천시 "마"선거구	3	교동, 남천·동현동, 신백·두학동	3

구 분	지역구명칭	재산의 원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	소계	10	4개 선거구	14
	청원군 "가"선거구	2	낭성면, 미원면, 가덕면, 남일면, 문의면	5
청원군	청원군 "나"선거구	3	남이면, 현도면, 부용면, 강내면, 강외면	5
	청원군 "다"선거구	2	내수읍, 북이면	2
	청원군 "라"선거구	3	오창읍, 옥산면	2
	소계	7	3개 선거구	11
보은군	보은군 "가"선거구	2	보은읍	1
工工工	보은군 "나"선거구	2	속리산면, 장안면, 마로면, 탄부면	4
	보은군 "다"선거구	3	삼승면, 수한면, 회남면, 회인면, 내북면, 산외면	6
	소계	7	3개 선거구	9
오치구	옥천군 "가"선거구	3	옥천읍	1
옥천군	옥천군 "나"선거구	2	동이면, 이원면, 군서면, 군북면	4
	옥천군 "다"선거구	2	안남면, 안내면, 청성면, 청산면	4

구 분	지역구명칭	자 수 원 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	소계	7	3개 선거구	11
영동군	영동군 "가"선거구	3	영동읍, 양강면, 학산면	3
	영동군 "나"선거구	2	용산면, 심천면, 양산면	3
	영동군 "다"선거구	2	황간면, 추풍령면, 매곡면, 상촌면, 용화면	5
	소계	6	2개 선거구	2
증평군	증평군 "가"선거구	4	증평읍 (연탄리, 송산리, 미암리, 사곡리 제외)	1
	증평군 "나"선거구	2	도안면 (증평읍 연탄리, 송산리, 미암리, 사곡리 포함)	1
	소계	6	2개 선거구	7
진천군	진천군 "가"선거구	3	진천읍, 문백면, 백곡면	3
	진천군 "나"선거구	3	덕산면, 초평면, 이월면, 광혜원면	4
	소계	7	3개 선거구	11
괴산군	괴산군 "가"선거구	3	괴산읍, 칠성면, 소수면, 문광면	4
서건보 	괴산군 "나"선거구	2	감물면, 장연면, 연풍면, 불정면	4
	괴산군 "다"선거구	2	청천면, 청안면, 사리면	3

구 분	지역구명칭	제출원 정수	선거구역	읍·면·동수
	소계	7	3개 선거구	9
음성군	음성군 "가"선거구	3	음성읍, 소이면, 원남면, 맹동면	4
古公正	음성군 "나"선거구	2	금왕읍, 생극면, 감곡면	3
	음성군 "다"선거구	2	대소면, 삼성면	2
	소계	6	2개 선거구	8
단양군	단양군 "가"선거구	3	단양읍, 대강면, 적성면, 단성면	4
	단양군 "나"선거구	3	매포읍, 가곡면, 영춘면, 어상천면	4

관련법령 발췌

【 공직선거법 】

-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 ①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3과 같이하며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·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·시·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.
- ②자치구 · 시 · 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.
- ③<u>비례대표 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100분의 10</u>으로 한다. 이 경우 단수는 1로본다.
- 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·시·군의원 지역선거구(이하 "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"라 한다)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, <u>시·도에 자치구·시·군</u>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.
- ② "생 략"(국회의원선거구획정 관련)
- ③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단체와 시·도의회 및 시·도선거 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.
- ④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 및 <u>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(이하</u> "선거구획정 위원회"라 한다)의 <u>위원이 될 수 없다</u>.
- ⑤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일비·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
- ⑥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,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월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, 자치구 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⑧ 생 략(국회의원선거구획정 관련)
- ⑨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·시·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⑩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, <u>시·도</u>의회가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①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,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- 제26조(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) ①생략(시·도의원선거구획정 관련)
 - ②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, 하나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,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·도 조례로 정한다
-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<u>시·군</u> 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·면·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·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·<u>시·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.</u>
- ④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, 하나의 시·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.

【 공직선거법-개정법률 】

부 칙

제2조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) 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에서 별표 2의 개정에 따라자치구·시·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하는 시·도는 그 조정을 위한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, 위원위촉, 의견청취 등 제 24조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를 이 법 시행 전에 시작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·시·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3월 15 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시·도의회는 2010년 3월 24 일까지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·시·군의원지역구의 명칭·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별표 2의 <u>충청북도의회의원</u>란 중 <u>청주시제4선거구부터 청주시제6선거구까지의 선</u> 거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청 주 시 제4선거구	모충동, 사직제1동, 사직제2동, 수곡제1동, 수곡제2동
청 주 시 제5선거구	분평동, 산남동
청 주 시 제6선거구	사창동, 성화·개신·죽림동

【 공직선거법시행령 】

- 제2조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「공직선거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 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두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시·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,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, 학계·법조계·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각각 2인을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②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.
 -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④위원회는 시·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위원장의 명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-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그기간 내에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⑦위원에게는 당해 시·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·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해당 시·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.
 - ⑨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

의 의결로 정한다.

【 공직선거관리규칙 】

- 제4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) ①법 제23조(자치구·시· 군의회의 의원정수)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 - 1.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·도별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·시·군별 인구 비율과 읍·면·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·면·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(선거구획정위원회)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.
 - 2. <u>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</u>(이하 "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"이라 한다)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따라 <u>먼저 정하고</u>, <u>지역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</u>(이하 "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"이라 한다)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.
 - ②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·시·군 안에서 지역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3조(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)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 정을 하는 경우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<u>읍·면·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</u> <u>른 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는 자치구·시·군</u>을 "강원도 동해시, <u>충청북</u> 도 증평군, 경상남도 김해시·거창군"으로 정함